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단기복무 장교 의무복무기간 단축 및 임관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54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30.
3.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복무장교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지원을 기피하여, 단기복무장교의 충원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여 단기복무장교의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며, 군인사체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축소

- 개정안은 현행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하고 3년으로 규정된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u>3년으로</u>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	4. ----- --- <u>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u> -----. ----- ----- ----- ----- ----- ----- ----- ----- -----

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 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 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 축할 수 있다. 5. ~ 7. (생략) ② ~ ⑥ (생략)	----- ----- ----- ----- ----- ----- -----.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에서는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관후보생은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 군사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장교로 임용되어 의무복무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음.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단축¹⁾
및 병 ‘내일준비 적금제도’ 신설 등 병 처우개선에 따라 단기복무
장교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복무
기간 대비 보수 등 처우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인식 등으로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군의 초급
장교 충원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1) 육군: 21개월→18개월, 해군: 23개월→20개월, 공군: 24개월→21개월, 해병대: 21개월→18개월,
사회복무요원: 24개월→21개월

[최근 학군장교 및 학사장교 지원율]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학군 지원율	3.0 : 1	2.7 : 1	2.5 : 1	2.3 : 1	1.6 : 1	1.7 : 1	3.5 : 1
학사 지원율	2.8 : 1	2.4 : 1	2.6 : 1	2.4 : 1	2.1 : 1	2.3 : 1	3.3 : 1

자료: 국방부

[병 내일준비적금 및 봉급 현황]

(단위: 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액	40	40	40	55
전역시 지원금(최대납입시)	349.2	600	810	990
전역시 지원금 월별환산액 (최대납입시)(A)	14.1	30	40	55
병 봉급(병장기준)(B)	67.6	100	125	150
병 월수령액 합계(A+B)	81.7	130	165	205

자료: 국방부

[초급간부 급여 수준 현황]

구 분		장교(소위)	부사관(하사)	병사(병장기준)
월 급여	1호봉	· 기본급 2,017,300원 · 기타수당 879,720원 - 세 전 : 2,897,020 - 세 후 : 2,780,444	· 기본급 2,000,900원 · 기타수당 845,330원 - 세 전 : 2,846,230 - 세 후 : 2,731,441	· 봉급 150만원 · 자산형성지원금 55만원 - 비과세 : 2,050,000
	2호봉	· 기본급 2,107,100원 · 기타수당 890,197원 - 세 전 : 2,997,297 - 세 후 : 2,877,405	· 기본급 2,021,500원 · 기타수당 847,733원 - 세 전 : 2,869,233 - 세 후 : 2,754,463	

주: 2025년 기준

자료 : 국방부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포함한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단기복무 장교의 실질적인 복무부담을 완화하여 그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또한, 사관후보생²⁾은 「군인사법」³⁾과 「군형법」⁴⁾의 적용을 받고, 교육훈련기간 중에는 「군인보수법」을 근거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⁵⁾받고 있으며, 중도 퇴교 후 병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⁶⁾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복무기간에 임용 전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등을 받고 있는 사람

3) 「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4)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5) 「군인보수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6) 「병역법 시행령」 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경우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⑦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입교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병으로 복귀된 사람

나.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보다 1년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까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실질적인 복무기간이 1/3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

단기복무 장교는 각 군 초급지휘관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인바, 국군 규모의 감축이 전제되지 않은 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동일한 규모의 초급장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신규 장교를 보다 많이 확보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최근 단기복무 장교 지원율과 각 군의 충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초급장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군 인력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과 개정안의 사관후보생 복무기간]

구분		현행법			개정안		
		임용 전 교육기간 (A)	의무복무기간 (B)	실질적 총 복무기간 (A+B)	임용 전 교육기간 (C)	의무복무기간 (D)	총 복무기간 (C+D)
학사사관	육군	16주	3년	3년 16주	16주	2년 - 16주	2년
	해군	10주	3년	3년 10주	10주	2년 - 10주	2년
	해병	11주	3년	3년 11주	11주	2년 - 11주	2년
	공군	12주	3년	3년 12주	12주	2년 - 12주	2년

자료: 국방부

둘째, 「군인사법」 제11조제1항은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을

장교로 임용하도록 규정⁷⁾하고 있는 바, 장교의 의무복무는 원칙

7)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3.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적으로 장교로 임용된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은 현행 「군인사법」 체계와 일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는 바, 장교의 임용 시기와 의무복무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11조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 부칙에서는 의무복무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임에도 복무기간 단축의 적용대상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의무복무기간은 군인의 신분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시행 당시 복무 중인 사람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혹은 시행 이후 군사교육소집 또는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방부(병무청)는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병역이행자 병역부담을 완화하여 지원율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임무공백 발생 및 획득소요 증가 등 상비병력 유지에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에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편, 본 법률안은 단기복무장교 외에도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을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하려는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5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맞추어 함께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310